

# 2025년 세종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프로그램 지원사업(창업자 후속지원) 모집공고(추가)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세종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2025년 「창업자 후속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03일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세종지식재산센터)장

##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IP디딤돌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로서 지원받은 특허기술에 한하여 센터 잔여 예산 내 지원 가능
  - ※ IP디딤돌 최초 사업수혜 연도 기준 +2년 이내 지원 가능
  - (예) '23년 10월에 IP디딤돌 출원한 경우 '25년 12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 세부내용

- 지원내용

구분	항목	건당 지원 단가 (자부담 제외, VAT포함)	지원건수	자부담
후속 지원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1,360,000원 이내	1건	현금20% (면제불가)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연간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선정방법: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격자 선정

- 선정기준

- 후속지원 필요성, 사업아이템 우수성, 대표자 의지
- 동 기술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

※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대하여 선정

※ 당해연도 해외진출, 소상공인, IP나래, 긴급지원, IP R&D 사업과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구 분	수행 대상	비 고
① 후속지원 대상자에 신청안내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대상자에 한정하여 공고
② 신청서 접수	수혜자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 <a href="https://pms.ripcc.org">https://pms.ripcc.org</a> )
③ 신청자 지원기준 및 적격성 검토	RIPC	운영위원회 개최
④ 선정결과 통보	RIPC → 수혜자	-
⑤ 협력기관 지정, 협약체결 및 과업 수행관리	RIPC → 협력기관	(특허망·PCT) IP디딤돌 권리화 수행 협력기관 (※수혜자 선택)
		(브랜드·디자인) 지식재산 긴급지원 협력기관 POOL
⑥ 과업 결과물 검수 및 비용 지급	RIPC → 협력기관	검수 후 비용 지급

○ 협력기관 지정

- (특허망 ■ PCT) IP디딤돌 국내 권리화를 수행한 협력기관

※ 권리화 지원 당시 수행한 협력기관 혹은 당해연도 선정된 협력기관 중 수혜자 본인 선택

- (브랜드 ■ 디자인) 지식재산 긴급지원 POOL 활용

○ 기타 유의사항

- (출원인)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개인명으로 출원

※ 법인명으로 출원할 경우 법인대표가 IP디딤돌 수혜자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

※ 공동 출원의 경우 IP디딤돌 프로그램 수혜자가 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c.org/pms>)을 통한 신청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세종센터 디딤돌 후속지원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세종지식재산센터)

예휘진 컨설턴트 044-998-7773/[hjye@kipa.org](mailto:hjye@kipa.org)



**첨부**

IP디딤돌 후속지원(특허망 구축) 관련 서류

**아이디어 신청서****(창업자 후속지원 특허망 구축(국내특허출원))**

신청인 정 보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 / 여
	주 소			
	휴대전화		E-mail	
	권리화 수혜연도		권리화 지원건수	
	창업정보	* 회사명: * 창업일자: * 직원수:		
희망건수	* 건			
아이디어 명칭				

<b>아이디어 요약</b>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
<b>아이디어의 상세한 설명</b>	아이디어의 구성요소, 작동원리, 실시 예,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도면**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도면, 그림을 이미지로 첨부

- \* 추진 중인(특허망 구축 희망하는) 국내특허출원 건수에 따라, 아이디어 신청서 각각 제출 필수
- \* 최초 수혜받은 권리화 아이디어와의 관련성 및 추가적인 차별적 특징 중심으로 작성 필요

## 세종지식재산센터장 귀하

##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가. 목적

- ① IP디딤돌사업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사업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나.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다.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IP디딤돌 사업의 운영기관

라.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IP디딤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종지식재산센터장 귀하**



